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9. 12. 18.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2월 15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9년 12월 15일

다. 상정일자 : 제67회 정기회 제11차 위원회 ('99. 12. 1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관리과장 최 선 응

가. 제안사유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914호), 동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 및 동법시행규칙(1999. 9. 2. 건설교통부령 제209호)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도로점용허가, 점용료등의 분할납부 및 점용료 감면등에 관한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명을 변경함. (안 조례명)

1) 현행 :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2) 개정 :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 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이외에 추가로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지정하는 시설물을 정함. (안 제2조)

1)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점용료 산정과 관련하여 점용료 부과대상 지상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3조 관련 별표)
 - 1) 전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2)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주차메타기, 소화전, 모래함 등
 - 3) 공중전화
 - 4)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도로 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그 용어를 변경함.
(안 제4조)
 - 1) 변상금 징수금액 : 점용료의 120퍼센트(도로법 제80조의 2, '99.2.8 개정)
 - 2) 종전 부당이득금 징수금액 : 점용료의 100퍼센트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하여 점용료 전액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점용료나 변상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을 하도록 함.(안 제8조)
-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과오납으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기간까지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함.(안 제9조)
-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세입을 시(市)·구(區)세입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1) 변경내용
 - 20미터이상인 도로는 시 수입 →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는 시 수입으로 변경
 - 20미터미만 도로(20미터미만 도로중 시소유 도로는 제외함)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 →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으로 변경
 - 2) 적용시기 : 2000. 1. 1부터 부과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
- 변압탑·무선전화기지국·우체통·교통량검지기 등 지상시설물중 박스류에 대한 점용료 기준을 정함.(안 제3조 관련 별표 제1호)
 - 1) 점용료 : 2,000원(1개당 1년 단위)

- 광고판, 간판 등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함. (안 제3조 관련 별표 제3호, 비교 제4항)
- 1) 표시 총면적 →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99. 2. 8 개정된 도로법과 '99. 8. 6 개정된 동법시행령 및 '99. 9. 2 개정된 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마포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제명도 개정함에 따라 전부개정방식을 취한 것으로 사료됨.
-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와 관련한 [별표]에 규정된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종전에는 무선전화기지역을 공중전화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1개당 54,20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1개당 2,000원으로 점용료를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도로 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변상금도 '99. 2. 8 개정된 도로법 제8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의 100%에서 120%로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제1항제2호를 신설하여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고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점용료나 변상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동 개정조례안 별표에 규정된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점용물의 종류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된 점용물은 구체적으로 점용물을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불특정 점용물을 규정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실제 대상 점용물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점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조영천 위원) : 도로점용료 산출기준은?
- 답변요지(최선웅 건설관리과장) : 인근지가 기준으로 하여 점용료를 산출하는바, 공시지가×점용면적×0.025임.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도로점용료 징수율이 저조한데 어느 부분이 저조한가?
- 답변요지(최선웅 건설관리과장) : 무단점용에 의한 점용료 체납이 가장 많음. 이유는 무단점용자의 대부분이 영세서민이므로 징수실적이 저조함.
- 질의요지(홍성환 위원) : 전자광고탑도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이 되는가?
- 답변요지(최선웅 건설관리과장) : 전자광고탑도 부과대상이 됨.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1999. 12. 15.

제 출 자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914호), 동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
 승 제16510호) 및 동법시행규칙(1999. 9. 2 건설교통부령 제209
 호)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및 점용료 감면 등에 관한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조례명을 변경함(안 조례명).

- (1) 현행 :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 (2) 개정 :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나.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 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이외에 추가
 로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지정하는 시설물을 정함
 (안 제2조)

- (1)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점용료 산정과 관련하여 점용료 부과대상 지상 시설물을 구체적
 으로 규정함.(안 제3조 관련 별표)

- (1) 전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2)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주차메타기, 소화전, 모래함 등.
- (3) 공중전화
- (4)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라. 도로 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그 용어를 변경함.(안 제4조)

- (1) 변상금 징수금액: 점용료의 120퍼센트(도로법제80조의2, '99. 2. 8 개정)
- (2) 종전 부당이득금 징수금액 : 점용료의 100퍼센트

마.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하여 점용료 전액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점용료나 변상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을 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과오납으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기간까지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함(안 제9조)

아.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세입을 시(市)·구(區)세입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11조)

(1) 변경내용

- (가) 20미터이상인 도로는 시 수입 ·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는 시수입으로 변경
- (나) 20미터미만 도로(20미터미만 도로중 시소유 도로는 제외함)

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 →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으로 변경

(2) 적용시기 : 2000. 1. 1부터 부과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

자. 변압탑·무선전화기지국·우체통·교통량검지기 등 지상시설물중
박스류에 대한 점용료 기준을 정함.(안 제3조 관련 별표 제1호)

(1) 점용료 : 2,000원(1개당 1년 단위)

차. 광고판, 간판 등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함.(안 제3조 관련 별표
제3호, 비고 제4항)

(1) 표시 총면적 →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

3. 개정근거

가.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914호)제11조, 제17조의2, 제22조,
제40조, 제80조의2 등

나. 도로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제24조, 제26조의2
내지 제26조의5 등

다. 도로법시행규칙(1999. 9. 2 건설교통부령 제209호)제20조 및
제21조 등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필요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부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물로서 영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되, 당해 인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⑤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의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집용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복지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시 부령 제20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일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집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집용료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은 집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집용료를 감면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의 집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집용물의 집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령의 발주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

제8조(집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1 집용료 및 민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점용료·변상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 할 수 있다.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인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부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서울특별시장의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사부위임조례에 의하여 당해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구”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

제11조(세입 구분) ① 서울특별시사부위임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서울특별시장의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을 제외한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

금은 구 수입으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입의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및 민상금부터 적용한다.

【별 표】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단위 :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공중 전화등 지상 시설물	전주, 기보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350
	변압기, 무선전화기 기국, 송화유선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유선전화기 기국, 교통신호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대설용구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000
	공 중 전 화				54,200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전력 구 동 지하매설 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 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직경 0.1미터이하	길이 1m	1년	850
		직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1,750
		직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3,500
		직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5,250
		직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7,000
		직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8,750
		직경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			13,100
		직경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			21,850
	직경 3.0미터초과	30,600			
	어스양카, 암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직경 0.1미터이하	길이 1m	1년	1,300
		직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2,600
		직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5,200
		직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7,850
		직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10,450
		직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13,100

		직경 1.0미터이하 2.0미터이하	길이 1m	1년	19,650	
		직경 2.0미터이하 3.0미터이하			32,750	
		직경 3.0미터이하			45,850	
3.광고탑·광고 판·간판(물출 간판을 포함한 다) ·현수막·사 설안내표지· 아래 기타 이 와 유사한 것	광고탑·광고판 ·간판(물출간판 을 포함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미만 적용)	표시면적 1㎡	1일	300	
		기 타		1년	88,400	
	사 설 안 내 표 지		1개	1년	73,650	
	현 수 막		표시면적 1㎡	1일	300	
	아 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176,800	
기 타		88,400				
4.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 차터미널·화 물터미널·자 동차수리소· 승강대·화물 적차장·휴게 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 입 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철도·케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 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 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용도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유교상기·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기호판매대, 구두수선대, 비스카드판매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굴착부분 기타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30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부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등이 1평방미터 또는 1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길이·표시 면적등이 1평방 미터 또는 1미터미만의 경우에는 1평방미터 또는 1미터로 산정한다.
4.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직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권·전기통신관통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기능유지 및 권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권지경은 도로점용허가권별로 전체관을 의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 제3호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위 표 제6호의 "기타"에는 다음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위 표 제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송전탑·변압기·저장고·기타"의 점용물
 - 나. 위 표 제4호·제5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 다. 위 표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가로관매대·구두수선대·비스카드판매대"이 외의 점용물
 - 라. 위 표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일시 설치한 것"이외의 점용물
 - 마. 위 표 제10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이외의 점용물
10.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11. 위 표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비스카드판매대·구두수선대 및 가로관매대는 점용료 산정총액이 연간 700,000원을 초과할때에는 700,000원으로 한다.
12.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